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17
----------	------

2022. 3. 17.(목)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2년 3월 17일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은 계약·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탁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 “위탁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2호)
- “위탁기관”을 “교육감”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등)
-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와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 해제 사항 추가(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가. 조례 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탁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례의 용어 중 ‘위탁기관’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위탁 주체를 명확히 하며,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안 제4조 등에서 조례의 용어 중 ‘위탁기관’을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탁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관리·감독 등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선정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 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고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음.
- 이 같은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2020년 8월 31일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정비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및 향후 추진하게 될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22. 충청북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 현황

(단위:천원)

순	부서명	사업명	계약자	위탁기간	금액	심의일자	비고
1	학교 자치과	학교협동조합운영	(주)사람과경제	'22.1.1~ '24.12.31	30,000	제371회 정례회 ( '19.3월)	재계약 (세 번째)
2	학교 자치과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사단법인 유스투게더	'21.1.1~ '22.12.31	299,960	제377회 정례회 ( '19.12월)	재계약 (첫 번째)
3	학교 자치과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사단법인 유스투게더	'22.1.1~ '24.12.31	288,495	제384회 정례회 ( '20.10월)	재계약 (첫 번째)
4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초록학교만들기 민간위탁사업	(사)플꿈 환경재단	'21.1.1~ '22.12.31	250,000	제377회 정례회 ( '19.12월)	재계약 (첫 번째)
5	괴산증평 교육지원청	괴산미음교육공동체	행복교육 괴산어울림	'22.1.1~ '22.12.31	100,000	제384회 정례회 ( '20.10월)	재계약 (첫 번째)
<b>합 계 (5건)</b>					<b>968,455</b>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2022. 2.)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5.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출석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6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를 할 때 반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자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입기관의 수입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입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입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입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입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입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공증인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중 “위탁기관”에 관한 정의 규정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음